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 2006 ~ 15

제출연월일	2006. 4. 12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제정이유

-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. 1. 1일 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「지방재정법」제60조에 의거「지방재정공시제도」가 운영됨에 따라
- 현행「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 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「거창군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(안 제2조).

- ○구성 인원 :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
 -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
- ○임 기: 2년(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)
- 나. 주요 심의사항(안 제3조).
 -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 -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 -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, 채권 관리현황
 - 기금운용 현황,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
-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여부 다.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(안 제8조).
 -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거 지급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
 - ▶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【도 예산담당관-1097(2006.2.22)호】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 타
 - (1)신・구조문대비표: 해당없음
 - (2)입법예고(2006. 3. 10~ 4. 1)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

- 제2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-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위원회는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-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제3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-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「지방재정법」제60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 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- 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- 3. 기타 지방재정계획(지방재정운영, 재원조달, 투자사업 수립 등)에 관한 사항
- 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-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6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예산담당

주사가 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거창군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 및 「거 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